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년월일 : 2003. 5. 2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잡종재산 매각대금 납부 및 공유재산의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예(2002.11.29)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10년 이내 기간은 연5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5년 이내 기간은 연8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22조제1항, 동조제2항)
- 나.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대상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23조의2)
-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예 따라 연체이자율이 연15퍼센트에서 연체기간별로 연12~15퍼센트로 차등적용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로 상한설정.
(안 제28조제1항)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83조, 동법시행령제84조, 제91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중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2조제1항중 “잔액에 연5퍼센트”를 “잔액에 연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잔액에 연8퍼센트”를 “잔액에 연6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를 “영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③(생략)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현행과 같음) ① ~③(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14조(사용 · 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 음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8. (생략) <신설>		제14조(사용 · 수익허가)----- ----- ----- 명시하여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9. 허가조건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 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종재산 매각대금을 10 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6. (생략)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 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제22조(-----) ① --- ----- ----- 잔액에 4 퍼센트의 ----- ----- 1.~6. (현행과 같음) ② ----- ----- 잔액에 연6퍼센트의 --- -----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 ③(생략)</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p>
<p>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③(생략)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p>	<p>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③(현행과 같음) ④</p>

현행	개정안
<p>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각 호에 의한다.</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u>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백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5. (생략)</p> <p>⑤ ~ ⑥(생략)</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u></p> <p>2.~5. (현행과 같음)</p> <p>⑤~ ⑥ (현행과 같음)</p>